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차 례

입 법 예 고

고양시 공고 제2025-2055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고양시 공고 제2025-2058호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
고양시 공고 제2025-2059호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6
고양시 공고 제2025-2066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5
고양시 공고 제2025-2067호	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37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25-259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41
고양시 고시 제2025-263호	도로명주소 고시	43

공 고

고양시 공고 제2025-2065호	고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45
-----------------------	---	----

고양시 공고 제2025 - 2055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6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 이유: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의직렬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일부 증액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수의직렬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수의직렬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증액함(안 제2조제2호).
- 나. 수의직렬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에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증진 업무’를 추가함(안 제2조제2호다목).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9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인적자원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인적자원과 인사팀(031-8075-2389)

- 팩 스: 031-8075-489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의 규정”을 “제2호”로, “수당지급액”을 “수당 지급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월 60만원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

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증진에 관한 업무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인적자원과
입 안 자	부 서 장 성 명	인적자원과장 박 영 산
	팀 장 성 명	인사팀장 유 병 응
	담 당 자 성명 · 연락처	신 민 영 (031-8075-2389)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 ----- ----- -- 제2호에 ----- ----- 수당 지급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월 50만원(이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2.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월 60만원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 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증진에 관한 업무

고양시 공고 제2025-2058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6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자전거 관련 정책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중이나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행정·재정적으로 비효율적이므로,
- 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기능은 유지하되,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필요시 설치·운영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고양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비상설화 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촉직 위원의 구성을 정비함. (안 제31조).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9월 15일 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도로정책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도로정책과 자전거문화팀(031-8075-2826)

- 팩 스: 031-8075-492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고양시”를 “시”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자전거 출·퇴근 수당)”을 “(자전거 출퇴근 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출·퇴근”을 “출퇴근”으로, “출·퇴근수당”을 “출퇴근 수당”으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출·퇴근”을 “출퇴근”으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전거·도로·교통·도시계획·도시정비 업무 담당 실장·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심의가 완료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34조제2호 중 “제31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를 “제31조제3항제1호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도로정책과
입 안 자	부 서 장 성 명	도로정책과장 정 일 형
	팀 장 성 명	자전거문화팀장 정 연 주
	담 당 자 성명 · 연락처	정 민 욱 (031-8075-2826)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공공자전거 운영) ① (생략)	제7조(공공자전거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공공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②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이용지역은 <u>고양시</u> 관내로 하고 1회 이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	2. ----- <u>시</u> ----- -----.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③ ④ (생략)	③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u>자전거</u> <u>출·퇴근</u> 수당) 시장은 친환경녹색교통정책과 에너지절감정책 및 자전거 이용생활화를 위해 자전거를 타고 <u>출·퇴근</u> 하는 노동자에게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u>출·퇴근수당</u> (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시장은 시범기관을 지정하여 6개월간 실시한 후에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u>자전거</u> <u>출퇴근</u> 수당) ----- ----- ----- ----- <u>출퇴근</u> ----- ----- <u>출퇴근 수당</u> ----- ----- ----- ----- ----- -----.
제24조(자전거 등록 등에 관한 혜택) ① 시장은 자전거를 등록하	제24조(자전거 등록 등에 관한 혜택) ① -----

현행	개정안
거나 자전거로 <u>출·퇴근</u> 시, 자전거보험 가입 시 자전거 이용자에게 각종 자전거 등록 등에 관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전거·도로·교통·도시계획·도시정비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2. 관계 기관 공무원 3. 자전거와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 <u>출퇴근</u>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전거·도로·교통·도시계획·도시정비 업무 담당 실장·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

현행	개정안
4. <u>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해</u> <u>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u> <u>수 및 전문가</u> 5. (생략) ④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u> <u>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제34조(위원의 해촉) (생략) 1. (생략) 2. <u>제31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u> <u>까지의</u> 규정에 따른 자격이 상실된 때 3. 4. (생략)	2.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u> <u>인정하는 사람</u> ④ <u>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u> <u>마다 구성하며, 심의가 완료되</u> <u>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u> 제34조(위원의 해촉) (현행과 같 음) 1. (현행과 같음) 2. <u>제31조제3항제1호의</u>----- ----- ----- 3. 4. (현행과 같음)

고양시 공고 제2025 - 2059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6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 이유:

-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양시민복지재단의 설립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재단의 법인격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함(안 제2조).
- 나. 재단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3조).
- 다.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 등 운영 재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9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복지정책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6(1층, 복지정책과)

- 전 화: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031-8075-3237)

- 팩 스: 031-8075-4915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 자치법규명: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변하는 복지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고양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양시민복지재단의 설립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고양시민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사업범위)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 분야 조사·연구
2. 사회복지자원 발굴·배분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3.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운영 및 지원
4.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5.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 중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위탁한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재산 및 운영재원)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보조금
3. 사업 수익금
4. 기부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개정 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및 시장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⑤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그 밖에 이사회 운영,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조직 및 직원) 재단의 조직·정원·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제9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재단이 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재

단에 관리 위탁하거나 사용·대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에 위탁한 시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이 추진하는 사무를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시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하여 작성한 검토 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16조(지도·감독) 시장은 재단 업무를 지도·감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고,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정)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 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 준비) ① 시장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재단의 설

립에 필요한 정관 및 내부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한 행위는 재단이 한 행위로 본다.
- ③ 시장은 재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대표이사에게 사무를 인계해야 한다.

제3조(예산 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소 관 부 서		복지정책과
입 안 자	부 서 장 성 명	복지정책과장 성 윤 진
	팀 장 성 명	복지정책팀장 이 진 희
	담 당 자 성명 · 연락처	이 하 동 (031-8075-3237)

고양시 공고 제2025-2066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6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특정 건축물의 개발행위허가기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여 현행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성장관리계획 구역 변경 절차 중 중요한 변경 사항은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 (안 제29조의3).
- 나. 환경피해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개발행위허가기준 적용 대상을 개선함(안 별표 28).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 가. 제출기일: 2025년 9월 15일 까지
-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도시계획정책관)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팀(031-8075-3072)
 - 팩 스: 031-8075-493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 자치법규명: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의 제목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별표 28 본문 중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신축하거나”를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말한다)의 건축 또는 특정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거나”로 하고, 비고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다만, 재축은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개발행위,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 건축심의 등을 포함한다) 등 각종 행위허가를 신청했거나 각종 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부서		도시계획정책관
입안자	과장 성명	도시계획정책관 유 제 학
	팀장 성명	도시계획팀장 방 은 호
	담당자 성명·전화	김 화 영 031-8075-3072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신 설>	제29조의3(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 ②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8] 특정 건축물 및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제19조) 특정 건축물(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신축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의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3. (생략) ※ 비고 1. ~ 2. (생략) 〈신설〉 3. ~ 7. (생략)	[별표 28] 특정 건축물 및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제19조) 특정 건축물(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말한다)의 건축 또는 특정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거나----- ----- 1. ~ 3. (현행과 같음) ※ 비고 1. ~ 2. (현행과 같음) 3.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다만, 재축은 제외한다. 4. ~ 8.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서식 1]

규제영향분석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소관 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담당부서	도시계획정책관	작성자	성명	김화영
	실장	서윤하		직급	시설7급
	과장	유제학		연락처	031-8075-3072
	팀장	방은호		이메일	heartdelux@korea.kr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개발행위허가 기준												
2. 구분	신설	강화	존속기한연장	내용심사									
		○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도시교통정책실 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팀 실장 : 서윤하 / 정책관 : 유제학 / 팀장 : 방은호 / 담당자 : 김화영												
4. 근거법령명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2] 제2호가목(3)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 규제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건축 등을 하려는 자 ○ (이해관계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건축 또는 해당 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는 지역의 거주민 등												
6. 규제존속기한	☐ 유 ☒ 무												
7.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 특정건축물(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적용 대상을 '신축'에서 '건축(재축 제외), 용도변경' 등으로 확대 ○ [별표 29]												
	<table><tr><th>현</th><th>행</th></tr><tr><td colspan="2">[별표 28] 특정 건축물 및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제19조) 특정 건축물(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신축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의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3. (생략) ※ 비고 1. ~ 2. (생략) 〈신 설〉 3. ~ 7. (생략)</td></tr></table>		현	행	[별표 28] 특정 건축물 및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제19조) 특정 건축물(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신축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의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3. (생략) ※ 비고 1. ~ 2. (생략) 〈신 설〉 3. ~ 7. (생략)		<table><tr><th>개</th><th>정</th><th>안</th></tr><tr><td colspan="3">[별표 28] 특정 건축물 및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제19조) 특정 건축물(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말한다)의 건축 또는 특정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거나----- ----- 1. ~ 3. (현행과 같음) ※ 비고 1. ~ 2. (생략) 3.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다만, 재축은 제외한다. 4. ~ 8.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td></tr></table>		개	정	안	[별표 28] 특정 건축물 및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제19조) 특정 건축물(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말한다)의 건축 또는 특정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거나----- ----- 1. ~ 3. (현행과 같음) ※ 비고 1. ~ 2. (생략) 3.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다만, 재축은 제외한다. 4. ~ 8.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현	행												
[별표 28] 특정 건축물 및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제19조) 특정 건축물(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신축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의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3. (생략) ※ 비고 1. ~ 2. (생략) 〈신 설〉 3. ~ 7. (생략)													
개	정	안											
[별표 28] 특정 건축물 및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제19조) 특정 건축물(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말한다)의 건축 또는 특정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거나----- ----- 1. ~ 3. (현행과 같음) ※ 비고 1. ~ 2. (생략) 3.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다만, 재축은 제외한다. 4. ~ 8.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가. 하수 등 처리시설 / 나. 고물상 /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 라. 폐기물 처분 시설 /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②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배경과 원인)

- (현행 조례)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입지, 경관 등)이 '신축'에만 한정하여 적용
- (문제점) 용도변경, 증축 등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다양한 설치 방식에 대하여 해당 기준 적용 공백 발생. 이에 따라 주거지역 인근 또는 경관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부적절한 설치 가능 등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

나.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사각지대 해소) 자원순환 관련 시설 설치 방법을 우회한 규제 회피 사례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확대 적용
- (정주환경·경관 보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설치 방식과 관계없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므로 지역 주민의 정주환경 보호 및 경관 보호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강화

2.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 지 여부 : ☐ 가능 ☒ 불가능

나. 규제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가능 ☒ 불가능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 ☐ 유 ☒ 무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규제의 경제·사회적 비용 및 편익의 비교 및 검토
 - (비용) 기존 사업자 등과의 지자체 간 갈등 발생, 이에 따른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시간 소요 등 초기 적용 비용 발생
 - (편익) 부적절한 입지의 자원순환 시설로 인한 지역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 감소,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은 물론 도시경관 및 자연경관 보호

- (비용과 편익 비교) 규제 강화로 인한 초기 적응 비용보다는 사회적 갈등 방지, 지역 주민 정주환경의 보호, 도시환경 및 경관 보전 등의 공적 편익이 크다고 판단됨.

4. 경쟁제한적 요소·기업활동 저해요소의 포함여부

- 해당 없음

5.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법률의 위임)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2-가-(3)에 따라 특정 건축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 세부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

※ 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한 입지 기준 개정 현황

▶ 2018. 6. 30.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일부 개정

- 지자체에서 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2. 개발행위허가 검토 사항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018. 12. 18.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 [별표 28] 특정 건축물(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신축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개발 행위허가기준 (신설)

- (개발행위허가 대상)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법제처 해석례, 대법원 판례*에서도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에도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관련 법령 준수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251(2024. 7. 11.)호 '용도변경 개발행위허가', 법제처 법령해석례 (12-0112) '건축법 제19조 등 관련', 대법원 판례(2015두43117) '건축물용도변경신고반려 처분취소등'

- (타 시·군 사례: 김포시, 용인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도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하여 운영

구분	대상	기준 내용(요약)	비고
김포시	자원순환 관련 시설 (수집·운반업 제외)	◦ 단독주택, 교육연구시설 등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 거리 300미터 이상 이격 등 ◦ 기존 건축물 및 시설에 위해(危害)가 발생하여 기존 건축물 및 시설의 용도변경 등으로 환경피해예방 및 개선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가능	제20조의2
용인시	자원순환 관련 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 주거지역 및 다중이용 건축물 등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이격 등 ◦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경우에도 적용	제20조 제4항 (별표27)

6. 규제의 집행 가능성(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등)

- 건축허가 관련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의 인력과 예산으로 집행 가능

7.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기간·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구비서류) 건축신고·허가(개발행위허가 의제) 신청 시, 세움터 시스템을 통해 일괄 접수
- (처리기간) 협의 처리 기간 내 협의 의견(개발행위허가 기준 부합 여부 등) 작성 후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 부서에서 총괄
- (처리절차) 협의처리 신청 외 구비서류, 처리기간, 처리절차가 추가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민원사무 처리 적정

고양시 공고 제2025-2067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6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 이유:

-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지정된 고양시 낚시금지구역 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을 제정하였으나,
- 과태료 부과·징수는 「하천법」 제98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사무처리 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이미 규정되어있으며, 「하천법」에 해당 규칙에 대한 위임조항이 부존재하여 실효성이 없음에 따라 해당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 규칙을 폐지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9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생태하천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3 충헌빌딩 3층 생태하천과

- 전 화: 생태하천과 생태하천팀 (031-8075-2769)

- 팩 스: 031-8075-4925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폐지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폐지규칙안

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은 폐지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생태하천과
입 안 자	부 서 장 성 명	생태하천과장 김 주 영
	팀 장 성 명	생태하천팀장 손 종 락
	담 당 자 성명 · 연락처	김 한 샘 (031-8075-2769)

고양시 고시 제2025 - 259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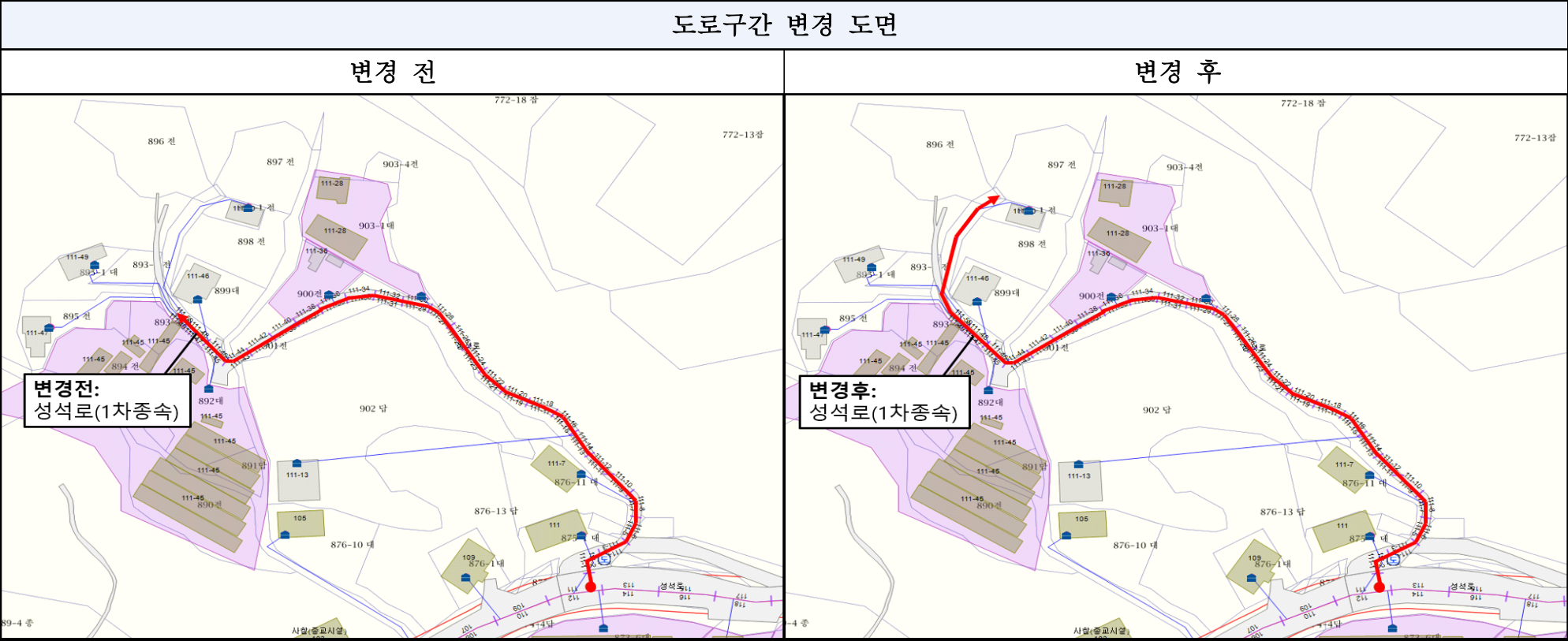
2025년 8월 26일

고 양 시 장

1. 고 시 일 : 2025. 8. 26. (화)
2. 고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
※붙임(조서 및 도면) 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031-8075-3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도면

도로명	관할 구역	구분	도로구간		길이(m)	폭(m)	기초번호 간격(m)	기초번호	변경 사유	고시일	효력발생일
			기점	종점							
성석로 (1차종속)	성석동	도로구간 변경	변경 전 성석동 873-12	성석동 893	252	4	10	111-1(111-2) → 111-49(111-50)	도로구간 변경 및 연장	2025. 8. 26.	2025. 8. 26.
			변경 후 성석동 873-12	성석동 897-1	313	4	10	111-1(111-2) → 111-61(111-62)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9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수렴 및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고양시 고시 제2025 - 263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6일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200번길 16-12 등 1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일	
별 지 참 조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사유
별 지 참 조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8075-3096~9)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5. 08. 2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신규고시 조서

연번	종 전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부 여 사 유	비 고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276-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200번길 16-12 (현천동)	2025-08-26	20100126	대덕로 시점에서 2000m에 위치한 도로	
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836-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 152-35 (덕이동)	2025-08-26	20081010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247-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46-6 (성석동)	2025-08-26	20090911	고양 팔현 중 성현을 도로명에 적용	
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26-7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 366-12 (장항동)	2025-08-26	20100126	장항-대화간 도로로 한 자석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591, 592, 59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로 109 (신원동)	2025-08-26	2012060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576-2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161 (화전동)	2025-08-26	20090710	고양시 중앙을 지나는 가장 큰 도로	
7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960-1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113번길 106-61 (대화동)	2025-08-26	20100126	송포로 시점에서 1130m에 위치한 도로	
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604-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214번길 12 (구산동)	2025-08-26	20100126	송산로 시점에서 2140m에 위치한 도로	

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연번	지번 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 사유	비고
1		해 당 없 음				

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지번주소 변경]

연번	도로명주소	변경전 지번주소	변경후 지번주소	지번주소 변경일	변경 사유	비고
1		해 당 없 음				

고양시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폐지 사유	멸실건물 고시일자	법정동	비 고
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113번길 106-59	2025-08-19	건물 멸실	2011-12-23	대화동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1668-20	2025-08-21	건물 멸실	2011-07-29	벽제동	
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역절길 3	2025-08-21	건물 멸실	2011-07-29	법곳동	
4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역절길 5	2025-08-21	건물 멸실	2011-07-29	법곳동	
5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로 39	2025-08-21	건물 멸실	2011-07-29	법곳동	
6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8-40	2025-08-21	건물 멸실	2011-12-23	덕이동	
7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 133	2025-08-21	건물 멸실	2011-12-23	대화동	

고양시 공고 제2025 - 2065호

고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외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고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6일
고양시 시장인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중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81	20~28	국지 도로	114	풍동 1127-84 번지	대로2-1 (정발산동 1355-7 번지)	일반 도로	-	건고 제126호 (02.06.20)	-
변경	중로	1	81	20~32	국지 도로	114	풍동 1127-84 번지	대로2-1 (정발산동 1355-7 번지)	일반 도로	-	건고 제126호 (02.06.20)	<중복결정> 일반철도 (973m ²)
기정	소로	3	651	4~8	집산 도로	164 (27)	마두동 848번지	풍동 1042-11 번지	일반 도로	-	고양시 고시 제2021-440호 (21.12.07)	<중복결정> 완충녹지6 (783m ²) 일반철도3 (112m ²)
변경	소로	3	651	4~17.4	집산 도로	164 (27)	마두동 848번지	풍동 1042-11 번지	일반 도로	-	고양시 고시 제2021-440호 (21.12.07)	<중복결정> 완충녹지6 (1,033m ²) 일반철도3 (224m ²)
기정	소로	3	652	4~8	집산 도로	145 (25)	풍동 1042-11 번지	마두동 848번지	일반 도로	-	고양시 고시 제2021-440호 (21.12.07)	<중복결정> 완충녹지6 (899m ²) 일반철도3 (113m ²)
변경	소로	3	652	4~17.4	집산 도로	145 (25)	풍동 1042-11 번지	마두동 848번지	일반 도로	-	고양시 고시 제2021-440호 (21.12.07)	<중복결정> 완충녹지6 (926m ²) 일반철도3 (220m ²)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A	6~8	특수 도로	147	마두동 858번지	풍동 1162-2 번지	보행자 전용 도로	-	금회신설	<중복결정> 완충녹지6 (377㎡) 완충녹지145 (179㎡) 일반철도3 (217㎡) 대로2-1 (277㎡) 대로3-1 (295㎡)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81호선	중로 1-81호선	○ 폭원변경 B = 20~28m → 20~32m	○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밖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교통 영향평가 검토 결과 및 실시설계 내용 반영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선형 변경
소로 3-651 호선	소로 3-651 호선	○ 폭원변경 B = 4~8m → 4~17.4m	○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밖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교통 영향평가 검토 결과 및 실시설계 내용 반영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선형 변경
소로 3-652 호선	소로 3-652 호선	○ 폭원변경 B = 4~8m → 4~17.4m	○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밖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교통 영향평가 검토 결과 및 실시설계 내용 반영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선형 변경
소로 3-A 호선	소로 3-A 호선	○ 도로신설 폭원 : 6~8m, 연장 : 147m	○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밖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교통 영향평가 검토 결과 및 실시설계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의견 반영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신설 결정

나. 공간시설

(1) 녹지

1. 경관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6	녹지	완충녹지	백석동1185일원	173,252	감)153	173,099	건고제367호 (91-07-11)	

2. 경관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	녹지	○ 면적변경 173,252㎡ → 173,099㎡ 감)153㎡	○ 중로1-81호선 변경에 따른 변경

□ 안내사항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서 : “계제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5. 8. 26.(화) ~ 2025. 9. 9.(화) (공고일로부터 15일간)

다.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고양시청 도시계획정책관

-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분은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정책관(☎031-8075-30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유의사항 :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향후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